

캐나다 여행자통관정보

2025년 3월 기준

휴대품	통관기준	비고
주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중 단 한 가지 사항만 면세로 반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4리터(모든 주류) - 1.5리터 와인 - 8.5리터 맥주류 ※ 알버타, 마니토바 및 퀘벡주는 만 18세 이상, 여타 주는 만 19세 이상 이어야 반입 가능 ※ 단위당 알코올 도수가 0.5%를 초과하지 않는 와인이나 맥주의 경우 주류에 해당하지 않음 	Nunavut 준주와 Northwest Territories의 경우, 통관기준을 초과하는 주류는 반입 불가능
담 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모두 면세품목으로 반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궤연(cigarette) 200개비 - 엽궤연(시가, cigar) 50개비 - 가공담배류 200g - Tobacco Stick 200개비 - 흡연 용기(vaping container) 12개 이하, 최대 120ml (액체) 또는 120g(고체) ※ 만 18세 이상이어야 반입 가능 	
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화 60불 이하의 선물은 면세반입 가능 • 주류나 담배류, 사업용 물품들은 선물의 범주 아님 	
외국환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 또는 기타 형태의 금전 문서가 캐화 10,000불(혹은 이에 상응하는 외국환)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필요(자금 세탁, 테러단체 자금 지원 방지법) 	
의약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국가들과 다른 기준을 사용할 가능성 있으며 반입 가능한 의약품의 종류 및 양이 제한되어 있음 	

휴대품	통관기준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방약은 포장된 상태로 영문 처방전 사본을 휴대해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캐나다 보건부 (Health Canada, www.hc-sc.gc.ca) 웹사이트 참고, hpbcpcpsf@hc-sc.gc.ca 로 문의 	
<p style="text-align: center;">식 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 복잡한 요구사항, 제한사항 등이 전 식품군에 걸쳐 적용됨 • 구체적인 내용은 캐나다 식품검사청(Canada Food Inspection Agency, www.inspection.gc.ca) 참고 • 미국에서 반입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제품 20kg 이내 - 육류 제품 20kg 이내(미국 원산지증명서 필요) ※ 단, 조류독감으로 인하여 닭 등 가금류는 소매포장 되어 있고, '미국산' 표시가 되어 있어야 반입 가능 - 어류 및 해산물(건조품 제외) 40kg 이내 - 어류 건조품 10kg 이내 - 과일 20kg 이내 - 채소 20kg 이내 - 꿀 20kg 이내 - 메이플시럽 20L 이내 - 메이플 제품(캔디 등) 4kg - 제빵류 20kg 이내 • 미국 외의 국가에서 반입하는 경우 대부분의 품목에 대하여 미국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나, 일부 품목의 경우 제한사항이 더욱 엄격하고 복잡하여 캐나다 식품 검사청에서 건별 확인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미국이 아닌 국가의 유제품은 치즈, 아이스크림, 요구르트만 반입 가능하고 우유는 반입 불가하고, 과일·채소는 원산지에 따라 반입이 불가능한 곳도 있음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 누락시 구금, 기소, 벌금 최대 कै화 1,300 부과 등 가능</p>

휴대품	통관기준	비고
반입제한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마: THC 또는 CBD 성분이 함유된 오일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대마 제품 반입 금지, 캐나다 외로 반출 또한 금지. • 총포 무기류: 반입 전에 캐나다 총기류 관리센터 (Canadian Firearms Program, www.cfc-cafe.gc.ca, 1-800-731-4000)에 문의 필수, 반입 시 해당 입국장소에서 반드시 신고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되고 모든 물품은 압수 조치 • 폭발물, 폭죽, 탄약류: 서면 증명서 혹은 허가증 등이 요구됨, 폭발물 관리부서(Explosives Regulatory Division, www.nrcan.gc.ca, erdmms@nrcan.gc.ca, 1-855-912-0012)에 문의 • 무선전파수신장비: 상황에 따라 Family Radio Service (미국에서 허가된 생활무전기), 휴대폰, PCS폰 등의 기기를 사용하기 위해 캐나다 산업부에서 허가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산업부 홈페이지(ised-isde.canada.ca)에서 확인 • 반입금지 소비자 제품: 위해제품에 관한 법령(Hazardous Product act)에 제시되어 있는 소비자 물품 반입금지. 유아보행기, 흥두(jerquirity beans, 비즈 공예에 쓰임) 등이 포함. 캐나다는 대부분 국가 대비 더 엄격한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점 참고 • 식물 및 동물: 멸종위기의 야생 동물 및 식물군 국제 무역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에 30,000여 종의 야생 동물, 식물 종 및 기타 품종에 대한 요구사항 포함 - 식물: 본국이 발행한 검역확인증(Phytosanitary certificate)이나 허가증이 필요한 품종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캐나다 식품검사청에서 확인(www.inspection.canada.ca) 	

휴대품	통관기준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완동물: 생후 3개월 이하의 강아지나 고양이는 서류 제출 없이 반입 가능한 대신 백신 접종 기록과 출생 확인 증명서 등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온타리오주는 pit bull종 개 반입 금지 ② 캐나다가 인정하는 '광견병 없는 국가(영국, 일본 등)'의 경우 생후 3개월을 넘긴 고양이, 개에 대해 '광견병 예방 접종증서' 또는 '수의사 서명과 날짜가 있는 증명서 (품종, 나이, 성별, 색깔, 특이 사항 등)' 제출 시 반입 가능 ③ 한국은 캐나다가 인정하는 '광견병 없는 국가'에 속하지 않으므로, 수의사 서명과 날짜가 있는 '증명서'와 '광견병 예방접종증서' 둘 다 필요 - 안내견: 맹인견 등의 경우 안내견을 배정받은 사람과 동행할 경우 제한 없이 반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개인이 기르는 개 또는 고양이에 대하여는 마이크로칩이 필요하지 않으나, 판매·번식용, 전시용, 연구용, 특별훈련, 또는 입양 목적으로 데려오는 개로서 8개월 이하 연령일 경우 마이크로칩 필요 ② 반려동물 사료: CFIA(Canada Food Inspection Agency, inspection.canada.ca/en/about-dfia-account)에서 사전 허가 필요 미국에서 온 여행객이 반려동물 사료가 미국산이고 반려동물이 함께 있는 경우 동반 반려동물을 위해 소량의 반려동물 사료(최대 20kg)를 허용 - 멸종위기의 야생 동물 및 식물군 국제 무역에 관한 협약에 의해 감시되는 동물들은 반입허가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개, 고양이 이외의 동물을 반입하고 싶은 경우 캐나다 식품검역청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 Importing food plant or animals) 등에 문의 필요 ② 멸종 위기 동물로 제작한 물품 	

휴대품	통관기준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지 물품: 아동 포르노, 음란물, 혐오 선전물 • 헌 매트리스: 수입국에서 훈증 소독, 세탁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없을 경우 반입 불가 • 문화 유산: 역사적 문화 유물로 간주되는 물품의 경우 적합한 수출 허가증 없이 반입 불가, 반입 전에 문화유산 이동관리처(Movable Cultural Property, bcm-mcp@pch.gc.ca , 1-866-811-0055)에 문의 필수 	
기타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를 경유하면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도 위의 내용이 적용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캐나다 국경 수비대 (CBSA) 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 필수 • 개인소유 배 혹은 승무원 포함 15인 이하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로 캐나다에 도착하였을 경우: 반드시 도착 전(최소 2시간 전, 최대 48시간 전)에 전화신고센터(Telephone Reporting Centre)를 통해 캐나다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에 신고해야 함 	